

새로운 반려동물(개 고양이) 수입검역제도 소개 - 2012년 12월 1일 시행 -



조 현 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부
 검역검사과 수의사무관/수의학박사
 john6102@korea.kr

I. 들어가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국내로 수입·반입되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요 증가(표 1.) 및 국내·외 여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12.02.08.)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수입검역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수입검역 조건은 해당 개·고양이에 대하여는 마이크로칩 이식, 광견병 항체가 검사 실시 및 수출국에서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 하였다. 이와 같이 수입검역 기준을 강화한 배경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 검역 기준을 이미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검역기준을 강화하였다.

검역검사본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2012년 한해 동안 반려동물 소유자, 재외공관 및 대중매체(일간지·무가지·SBS-TV 동물농장) 등을 활용하여 제도시행과 관련된 사전준비 및 홍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 제도의 초기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새로운 반려동물 수입검역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다시한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수입)되는 수입검역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표 1.〉 최근 4년간 개·고양이 수입실적 (단위 : 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1월
개	8,465	11,222	15,392	12,460
고양이	2,129	2,431	2,114	1,792
계	10,594	13,653	17,506	14,252

II. 새로운 수입검역 조건 주요 내용

2012년 12월 1일부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수입) 되는 개·고양이는 아래 4가지의 수입검역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기존에는 국내 도착 시 개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었으나, 2012년 12월 1일부터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표 2.).

둘째, 모든 연령의 개·고양이는 개체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내장 또는 외장)하여야 하고 개체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셋째,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는 선적전 24개월 이내에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넷째,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항체가는 최소 0.5IU/ml 이상이어야 함(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

〈표 2.〉 제도 변경 전·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제도 변경 전 ('12.12.1. 이전)	제도 변경 후 ('12.12.1. 이후)
제출 서류 (국내도착)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동물병원 발급)	검역증명서 (수출국 정부 발급)
광견병 항체가 검사	없음	- 광견병 항체가 검사 - 검사결과 0.5IU/ml 이상
개체 식별 수단	없음	- 마이크로칩 이식(내장 또는 외장) - 개체식별 번호 검역증명서에 기재

III. 끝내며

검역검사본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수입검역 제도 시행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

지 않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고, 검역 증명서 첨부 이외의 수입검역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 검역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류검역을 실시하여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개방하고 있다(수입검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일 개방). 그러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반입할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검역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아울러,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한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와 관련된 Q&A 및 검역관련 문의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 동물·축산물 ⇒ 국가별 개·고양이 검역절차 ⇒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를 참조하고, 기타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031-467-1947)로 문의하면 친절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반려동물(개·고양이) 수입검역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개·고양이 수입동물 검역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가. 개·고양이 검역기간

1)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
- 중화항체가 0.5IU/ml 이하인 경우 :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

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 당일.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한다.

나. 구비서류 및 휴대두수

- 검역증명서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다. 개체 확인 및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 개·고양이는 영구적인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이식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개·고양이는 선적 전 24개월 이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광견병 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는 최소 0.5IU/ml 이상임을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한다.

라. 광견병 비발생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질병 발생 보고 등에 따른다.

- ('12. 9월 기준) 일본·대만·사이프러스·호주·뉴질랜드·포르투갈·아이슬랜드·괌·하와이·사모아·케이맨제도·프랑스령폴리네시아·마르티니크·리위니옹섬·월리스프투나·도미니카공화국·리히텐슈타인·말레이시아·스위스·영국·아일랜드·피지제도·싱가포르·자메이카